

여객자동차운송사업(시내버스) 개선명령

☐ 관련규정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(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)

☐ 개선명령 사항

- 운송사업자 : 대창운수
- 명령노선 : 92번
- 명령내용 : 경로변경(붙임 참고)
- 명령기간 : 2026.10.31.(토) ~ 별도명령시까지
- 명령사유 : 동림마을 정류장 진입로 진입 불가

☐ 기타사항

-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및 버스 안내문 부착 등